

『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2005년 구미시경로회관 부지(구미시 산책길 51)에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”이 개관되면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「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폐지조례안은

“구미시경로회관”이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변경되어 조례 규정 대상인 구미시경로회관이 부존재 하며, 현재 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2005. 11. 4 제정되어 운영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